

제1차 사회적 기업 인증결과와 과제

조영복*

I. 서론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혹은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의 등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의 실질적인 주체는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기업의 본질로 하는 전통적인 기업관과 사회서비스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공익적 목적관을 동시에 지닌 제3의 경제주체이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공익적 목적을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달성하도록 함으로써 복지국가의 위기와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공익을 위한 민간기업(OECD, 1999: 10)” “영리목적의 사회사업(Dees and Anderson, 2003)”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Wallace, 1999)” 등으로 다양하며 통일된 정의는 내려지지 않았지만(OECD, 1999), 사회적 목표달성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상업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독립된 조직을 말한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DTI, 2001).

사회적 기업은 지금까지의 기업과는 다른 방식의 차별화된 사회적 경제에 의한 새로운 기업 형태로서 자본주의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과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구조 속에서 기업의 이윤과 사회적 공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은 유럽에서 시민사회, 자원봉사단체,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유럽에서의 사회적 기업은 유럽연합(EU)과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으로 확산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유럽보다

* 사회적기업연구원장, 부산대 경영학부 교수(ybcho@pusan.ac.kr).

는 시장주의적 접근에 의한 사회적 기업이 발달하였는데, 비영리조직의 수익사업의 모델이나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발전해 왔다(양용희, 2005).

이러한 사회적 기업은 정부의 사회와 경제에 대한 핵심 정책목적 실행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을 발전시켜온 서구사회의 연구 결과를 검토해 보면 사회적 기업은 ① 지속발전가능한 경제활동으로 부의 창출에 기여하고, ②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며, ③ 지역사회 재건과 ④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개혁, 그리고 ⑤ 윤리적 시장의 장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IMF 경제위기 이후 증가된 실업과 빈곤을 치유하기 위하여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져가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제정을 비롯한 정책입안과 정부와 기업 및 민간이 함께 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등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활동영역이 광범위해지고 있다. 정부는 2003년부터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시작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2006년 여야합의로 사회적기업육성법이 통과되고 2007년 7월 1일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지원, 시설비 지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재정지원을 하게 된다.

2007년 10월 노동부는 사회적 기업 인증신청을 한 전국 113개 기관에 대한 심사를 거쳐 36개의 기관을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적 기업으로 공식 인정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이 최초의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의 개념은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않으며, 그 정의에서부터 법적 형태 등 많은 과제들이 해결되어야만 한다. 여기에서는 최초로 진행된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인증과정과 그 결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사회적 기업의 인증에 대한 과제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II. 제1차 사회적 기업 인증과정

1. 사회적 기업 인증과 지원

우리나라는 2006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였으며, 2007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은 사회적 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 기업을 인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증된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경영지원, 시설비 지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재정지원(사회서비스 제공기업에 한정)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경영지원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업무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중에서 공모·선정하여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가, 지자체가 사회적 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는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기업에게 보호된 시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조세감면 등과 같은 세제지원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 기업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4대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복지, 교육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심사를 통해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비용 등 재정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2. 사회적 기업 인증신청과 심사기준

가. 인증신청 결과

제1차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추진체계는 신청공고, 인증신청 접수 및 보고(지방고용지원센터), 1차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심사기준 승인), 인증심사소위원회 심의, 2차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인증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의 인증에 이르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하여 노동부는 인증신청(2007. 7. 18~2007. 9. 3)을 받았으며, 제1차 신청결과 모두 113개 기관이 신청하였다. <표 1>에서 보면 신청한 기관의 업종별로는 환경분야가 25개(22.1%), 사회복지가 22개(19.5%), 기타분야가 23개(20.4%) 신청하였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서울·강원(39개, 34.5%), 경기·인천(20개, 17.7%), 대전·충남북(19개, 16.8%), 광주·전남북(17개, 15.0%), 대구·경북(10개, 8.8%), 부산·경남(8개, 7.1%) 순으로 서울·경기지역이 50%에 이르며, 조직형태로는 비영리민간단체(62개, 54.9%), 상법상 회사(27개, 23.9%), 민법상 법인(22개, 19.5%)·조합(2개, 1.7%) 순으로 나타났다.

유급근로자 고용인원별로는 5인 미만(20개, 17.7%), 5인 이상~10인 미만(13개, 11.5%),

〈표 1〉 사회적 기업 인증신청기관의 유형별 분류

(단위: 개, %)

	내 용	기관수	비 율
업종	교육	13	11.5
	보건	4	3.5
	사회복지	22	19.5
	환경	25	22.1
	문화	6	5.3
	보육	3	2.7
	간병·가사지원	17	15.0
	기타	23	20.4
지역	서울·강원(서울청)	39	34.5
	경기·인천(경인청)	20	17.7
	대전·충남북(대전청)	19	16.8
	광주·전남북(광주청)	17	15
	대구·경북(대구청)	10	8.8
	부산·경남(부산청)	8	7.1
조직형태	상법상 회사	27	23.9
	민법상 법인	22	19.5
	조합	2	1.7
	기타 비영리민간단체	62	54.9
유급근로자 고용인원수	5인 미만	20	17.7
	5인 이상~10인 미만	13	11.5
	10인 이상~20인 미만	25	22.1
	20인 이상~30인 미만	18	15.9
	30인 이상	37	18.6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일자리 제공형	39	34.5
	사회서비스 제공형	21	18.6
	혼합형	32	28.3
	기타형	21	18.6
전 체		113	100

10인 이상~20인 미만(25개, 22.1%), 20인 이상~30인 미만(18개, 15.9%), 30인 이상(37개, 32.7%)이 신청하여 5인 이상인 기관이 93개(82.3%) 기관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목적실현’²⁾ 유형별로는 일자리 제공형(39개, 34.5%), 혼합형(32개, 28.3%), 사회서비스 제공형(21개, 18.6%), 기타형(21개, 18.6%)의 순으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사회적 목적실현 유형은 ① 일자리 제공형(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② 사회서비스 제공형(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③ 혼합형(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④ 기타형(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결정)이 있으며 기준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를 참고할 수 있다.

참고로 취약계층 대상별로는 장애인 대상 23개, 고령자 대상 6개, 탈북자 대상 1개, 외국인 근로자 대상 1개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일자리 참여기관은 NGO단독형(20개), 기업 연계형(15개), 광역형(4개), 부처공모형(1개) 등 총 40개소가 신청하였으며, 자활사업(공동체, 사업단 포함)에서 28개 기관이 신청하였다.

나. 인증심사 기준

인증요건별 심사는 사회적기업육성법, 동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에 의거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법령 등에 의한 사회적 기업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조직형태

사회적 기업은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춰야 하며 이러한 조직형태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가 있다.

2)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사회적 목적실현

사회적 기업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여야 한다. 첫째,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일자리 제공형)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100분의 50 이상(2008년까지는 30%)이어야 한다. 둘째,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사회서비스 제공형)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50% 이상(2008년까지는 30%)이어야 한다. 셋째,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의 경우(혼합형)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30% 이상(2008년까지는 20%)이어야 한다. 그리고 넷째,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정해진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례별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사회적 기업은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기관의 정관과 의사결정구조를 명시적으로 제시한 조직운영규정 등을 갖추어야 한다.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사회적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해당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노무비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6) 정관이나 규약

사회적 기업은 정관이나 규약을 갖추어야 하며, 여기에는 목적, 사업내용, 명칭, 주된 사무소의 위치,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결정방식, 수익 배분 및 채투자에 대한 사항, 출자 및 용자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7) 이윤의 사회적 목적사용

사회적 기업의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3. 인증결과

사회적 기업을 인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심사방법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심사결과 113개 신청기관 가운데 36개가 노동부의 공고(2007. 10. 24)를 거쳐 제1차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되었다.

제1차로 인증된 사회적 기업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종별로는 교육(1개, 2.7%), 보건(2개, 5.6%), 사회복지(2개, 5.6%), 환경(12개, 33.3%), 문화(1개, 2.7%), 보육(1개, 2.7%), 간병·가사지원(8개, 22.2%), 기타 제조·가공·판매 등(9개, 25.2%)의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강원(13개, 36.1%), 경기·인천(11개, 30.7%), 부산·경남

〈표 2〉 제1차 인증 사회적 기업의 특성

(단위: 개, %)

	내 용	기관수	비 율
업종	교육	1	2.7
	보건	2	5.6
	사회복지	2	5.6
	환경	12	33.3
	문화	1	2.7
	보육	1	2.7
	간병·가사지원	8	22.2
	기타(제조·가공·판매 등)	9	25.2
지역	서울·강원(서울청)	13	36.1
	경기·인천(경인청)	11	30.7
	부산·경남(부산청)	3	8.3
	대구·경북(대구청)	3	8.3
	광주·전남북(광주청)	3	8.3
	대전·충남북(대전청)	3	8.3
조직형태	상법상 회사	10	27.8
	민법상 법인	10	27.8
	조합	1	2.7
	기타 비영리민간단체	15	42.7
유급근로자 고용인원수	5인 미만	0	0
	5인 이상~10인 미만	3	8.3
	10인 이상~20인 미만	6	16.7
	20인 이상~30인 미만	7	19.4
	30인 이상	20	55.6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일자리 제공형	13	36.1
	사회서비스 제공형	3	8.4
	혼합형	12	33.3
	기타형	8	22.2
전 체		36	100

(3개, 8.3%), 대구·경북(3개, 8.3%), 광주·전남북(3개, 8.3%), 대전·충남북(3개, 8.3%) 순으로 수도권 중심지역이 50%를 넘어 높은 분포율을 나타냈으며 그 외의 지역은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36개 기관들의 조직형태로는 상법상 회사(10개, 27.8%), 민법상 법인(10개, 27.8%), 조합(1개, 2.7%), 기타 비영리민간단체(15개, 42.7%)로 나타났다.

유급근로자 고용인원별로는 5인 이상~10인 미만(3개, 8.3%), 10인 이상~20인 미만(6개, 16.7%), 20인 이상~30인 미만(7개, 19.4%), 30인 이상(20개, 55.6%)으로 5인 미만의 기관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10인 이상인 기관이 23개(91.7%) 기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목적실현 유형별로는 일자리 제공형(13개, 36.1%), 사회서비스 제공형(3개, 8.4%), 혼합형(12개, 33.3%), 기타형(8개, 22.2%)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그 밖에 제1차 인증 사회적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과 기타 인증요건을 대부분

충족시켰으며, 특히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에 있어 모든 기관들이 체계적인 운영위원회나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조직구조를 통해 기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주축이 되는 노동조합이 결성된 기관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6개 기관 중 단 1개의 기관(사회복지법인 위캔)만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된 36개 기관 이외에 인증신청을 철회한 1개 기관을 제외한 76개 기관은 불인증되었으며, 불인증된 주요 사유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³⁾ 불인증 사유를 검토해 보면,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기관들이 많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형태나 영업수익, 정관규정, 그리고 상법상의 회사인 경우 이윤의 재투자에 대한 요건들은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법적 요건이다. 특히 조직형태 가운데 법인, 조합, 상법상의 회사나 비영리민간단체 등과 같은 조직형태가 아닌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될 수 없는 개인사업자의 신청이 많았다.

이와 같이 불인증 사유의 주된 이유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판단하는 사회적 목적실현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법적인 요건에 미비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고, 사회적 기업의 기본적인 법적 요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사회적 기업 불인증 사유

(단위: 개, %)

	기관수	비율	비 고
조직형태 미비	30	39.5	개인사업자 16개
유급근로자 미고용	1	1.3	
사회적 목적 불분명	5	6.6	
의사결정구조 불명확	2	2.6	
영업수익 미실현	13	17.1	
정관, 규정 미제정	14	18.4	
이윤 사용 불명확	5	6.6	
기타	6	7.9	
전 체	76	100	1개 기관 인증신청 취소

3) 불인증 사유가 여러 가지인 경우는 주된 사유로 분류하였다.

Ⅲ.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과제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시행에 따라 제1차로 36개의 사회적 기업이 인증된 결과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의 인증과 육성은 이제 초기단계로 보다 발전적인 방향이 모색될 수 있다. 여기서는 금번 제1차 사회적 기업 인증신청과정과 인증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바탕으로 향후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기업 인증신청기관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컨설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불인증된 기관의 대부분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판단을 요하는 부분에 의해 심사에서 불인증된 것이 아니라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모범정관과 규약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매뉴얼의 제작과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워크숍 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사회적 기업 인증을 지원하는 기관의 지정과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기업으로 불인증된 기관에 대한 지원이다. 제1차 사회적 기업 인증과정에서 불인증으로 분류된 기관들은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춘 기관이 많다. 특히 한두 가지의 법적인 요건을 갖춘다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될 수 있는 기관들도 다수 존재한다. 그러므로 불인증된 기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되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기업 인증신청기간에 대한 탄력적 운영이다. 현재 사회적 기업 인증 및 인증신청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부(노동부)가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1차 사회적 기업 인증은 기간을 정하여 신청이 이루어지고 심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의 인증은 경쟁이 아니라 요건을 갖추면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상시적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을 하고 반기별로나 분기별로 사회적 기업 인증에 대한 심의를 하는 방법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된 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은 사회적 기업이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 등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 인증에 대한 취소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를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되는 사회적 기업의 수가 늘어감에 따라 이러한 사후관리의 문제는 사회적 기업 인증업무와 더불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의 인증업무와 사후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신

청과 인증된 사회적 기업의 50% 이상이 서울·경기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은 사회적 기업의 지역밀착성으로 볼 때 지역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IV. 결론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시행에 따라 제1차 사회적 기업 인증신청 결과 전국에서 113개의 기관이 신청하였으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6개 기관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되었다. 신청결과 환경과 사회복지 분야의 신청이 많았으며,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거한 심사기준에 따라 형식요건 심사와 위원회 심사가 이루어졌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된 36개 기업의 65%는 서울·경기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직형태로는 비영리민간단체와 상법상의 회사, 민법상의 법인이 각각 40%, 27%,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30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관이 56%이다. 사회적 목적실현 유형에는 일자리 제공형과 혼합형이 각각 36%, 33%이며, 업종별로는 환경분야가 33%, 간병·가사지원이 22% 그리고 기타부문이 25%로 인증되었다.

불인증된 기관의 주된 이유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판단하는 사회적 목적실현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법적인 요건에 미비한 것이 대부분으로 아직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고, 사회적 기업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증에 있어 사회적 기업 인증신청기관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컨설팅이 필요하며, 사회적 기업으로 불인증된 기관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사회적 기업의 인증은 경쟁이 아니라 요건을 갖추면 인정해 주는 제도이므로 신청기간과 심사에 대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의 인증업무와 사후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KLI**

<참고문헌>

- 양용희(2005), 『수익형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 방안』, 노동부 보고서.
조영복 외 역(2006), 『사회적 기업 저널(Social Enterprise Journal』 1(1), 사회적기업연구

원.

- _____ (2007), 『사회적 기업 저널(Social Enterprise Journal』 2(1), 사회적기업연구원.
- _____ (2007), 『사회적 기업 저널(Social Enterprise Journal』 3(1), 사회적기업연구원.
- 조영복·곽선화 역(2007), 사회적 기업 : 성공을 위한 전략(Social Enterprise: a strategy for success, DTI), 사회적기업연구원.
- _____ (2007), 사회적 기업 진행보고서 : 성공을 위한 전략(Progress Report on Social Enterprise: a strategy for success, DTI), 사회적기업연구원.
- Salamon, L.(1990), *The Third Sector Comparative Studies of Nonprofit Organization*, Helmut Anheier and Wolfgang Seibel(eds.), Walter de Gruyter and co., 노연희 역(2002), 「제3섹터란 무엇인가」, 아르케.
- Dees J. G. and B. B. Anderson (2003), “For-Profit Social Ventures”, *In Social Entrepreneurship*, (eds.), M. L. Kourilsky and W. B. Walstad. Birmingham, UK: Senate Hall Academic Publishing.
- Defourny. J(2001), “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 Borzaga, C. et al.(eds),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Routelege.
- DTI(2002), *Social Enterprise: A Strategy for Success*.
- _____ (2004), *A Report on Social Enterprise: A Strategy for Success*.
- _____ (2004), *Annual Report and Resource Accounts 2003~2004*.
- OECD(1999), *Social Enterprise*, OECD Publications.
- _____ (2003), *OECD Employment Outlook: Towards More and Better Jobs*.
- Wallace S. L.(1999), “Social Entrepreneurship: The Role of Social Purpose Enterprise in Facilitating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Developmental Entrepreneurship* 4(2), pp.153~174.